

조문별 제·개정 이유서

◇ 행정규칙명 : 학술연구용품 국내제작 곤란물품 추천업무 처리규정

◇ 제 · 개정 이유 : ‘재검토기한’ 도래

◇ 주요내용

가. ‘재검토기한’의 연장(안 제12조)

해당 고시의 재검토기한을 “2021년 4월 1일을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”에서 “2024년 4월 1일을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”으로 개정